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8. 7. 24 문팔갑의원외 4인
- 나. 회 부 일 자 : 98. 7. 30
- 다. 상 정 일 자 : 98. 7. 30(제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문 현 근

나.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37조(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 및 질문 응답)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시·군정 질문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소속행정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부기관인 읍·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수 없으므로 화순군 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서 읍·면장을 제외코자함.

다.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5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를 삭제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석호)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수 없으므로 화순군 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서 읍·면장을 제외 코자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변경
제2조(범위) (생략) 1~4 (생략) 5. <u>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장</u>	제2조(범위)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삭제)</u>